

종 법(宗法)

법규위원회법

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해 종단의 종헌 종법 기초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규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법규위원회는 중앙종회에 부의하는 종헌 종법의 가초심사를 행한다.

제3조 법규위원회에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심의한다.

1. 제1종법

제1종법은 법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공포 시행하는 종헌·종법을 말한다.

2. 제2종법

제2종법은 제1종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으로서 종무회의 결의로 총무원장이 공포 시행하는 종규 종령을 말한다.

3. 제3종법

제3종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규를 말한다.

1. 제2종법 시행에 필요한 세칙 규정
2. 시·도 종무원 사찰에서 시행하는 법규 세칙
3. 종단 법규의 해석에 관한 규정
4. 긴급을 요하거나 종단 사무에 관한 종규 종령 등 처무규정은 법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무회의의 결의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